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농림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 정원(행정 또는 임업 2명)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두는 정원 1명(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복수직렬 정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0. ~ 3.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6급”을 “5급”으로 한다.

제22조제11항 중 “임용한다”를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22”를 “321”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5”로 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5”로 하며, 임업연구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34”를 “3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28”을 “327”로 하며,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5”를 “66”으로 하며, 임업연구사 “1”을 “0”으로 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33”을 “34”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임업연구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6의4 중 총계 “34”를 “35”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5”로 하며, 임업연구사 “11”을 “12”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7”을 “139”로 하고, 농림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37”을 “139”으로 하고, 농림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256”을 “266”로 하고, 일반직 계 “256”을 “266”으로 하며, 4급 이하 “251”을 “26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4”를 “5”로 하고, 일반직 계 “4”를 “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라 국립 산림과학원으로 이체되는 산림청 소속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3과 별표3의2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3의3과 별표3의4를 적용한다.

제3조(국립산림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립

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8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8의2을,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8의3를 적용한다.

[별표 3의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323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317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5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5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4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전산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4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9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사	1
임업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보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4
소방경	4

[별표 3의4]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335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329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2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5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6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6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2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4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9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6
전산주사보	4
운전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6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9
운전서기보	4
임업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온라인홍보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4
소방경	4

[별표 8의2]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256
일반직 계	25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4
4급 이하	251

[별표 8의3]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264
일반직 계	26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4
4급 이하	25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u>6급</u> 1명), 정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5급</u> ----- -----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 ⑩ (생 략) ⑪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u>임용한다</u>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 ----- <u>임용할 수 있다</u>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2</u>	<u>321</u>	-1
·	·	·	
·	·	·	
일반직 계	<u>316</u>	<u>315</u>	-1
·	·	·	
·	·	·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방재</u>	<u><신 설></u>	<u>1</u>	+1
<u>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방재안전사무관 또는</u>	<u>1</u>	<u><삭 제></u>	-1
<u>시설사무관</u>			
전산사무관	<u>4</u>	<u>3</u>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4</u>	<u>65</u>	+1
·	·	·	
·	·	·	
임업연구사	<u>1</u>	<u>0</u>	-1
·	·	·	
·	·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4</u>	<u>333</u>	-1
·	·	·	
·	·	·	
일반직 계	<u>328</u>	<u>327</u>	-1
·	·	·	
·	·	·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방재</u>	<u><신 설></u>	<u>1</u>	+1
<u>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방재안전사무관 또는</u>	<u>1</u>	<u><삭 제></u>	-1
<u>시설사무관</u>			
전산사무관	<u>4</u>	<u>3</u>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5</u>	<u>66</u>	+1
·	·	·	
·	·	·	
임업연구사	<u>1</u>	<u>0</u>	-1
·	·	·	
·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u>	<u>34</u>	+1
일반직 계	<u>33</u>	<u>34</u>	+1
·	·	·	
·	·	·	
임업연구사	<u>11</u>	<u>12</u>	+1
·	·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u>	<u>35</u>	+1
일반직 계	<u>34</u>	<u>35</u>	+1
·	·	·	
·	·	·	
임업연구사	<u>11</u>	<u>12</u>	+1
·	·	·	

[별표 7]

지방산립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7</u>	<u>139</u>	+2
·	·	·	
·	·	·	
농림운영서기보	<u>4</u>	<u>3</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u>137</u>	<u>139</u>	+2
·	·	·	
·	·	·	
농림운영서기보	<u>4</u>	<u>3</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56</u>	• <u>266</u>	+10
일반직 계	<u>256</u>	<u>266</u>	+10
•	•	•	
•	•	•	
4급 이하	<u>251</u>	<u>261</u>	+10

[별표 10]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4</u>	<u>5</u>	+1
일반직 계	<u>4</u>	<u>5</u>	+1
•	•	•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u> <u>또는 임업연구관</u>	<u><신 설></u>	<u>2</u>	+2
<u>행정사무관</u> 또는 <u>임업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